

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

㈜리치먼드자산운용(이하 "당사")은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.

1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
- (1)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
- ①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 -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에 대한 총액과 증권에 대한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 -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 - ④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 -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당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
- (2)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정보
- ①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 - ②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 개월이 지난 정보. (다만,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인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5 영업일이 지난 정보)
 - ③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당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
II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의 정보

- (1) 정보교류 차단대상 :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(투자자문 업무 포함, 이하 같음)
- (2)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
 - ①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 상품 등 자산에 관한 정보
 - ②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

III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- (1)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계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목록으로 지정
 - ① 회사가 공개되지 않은 거래에 회사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주요정보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 - ② 법률, 계약, 내부규정 상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
 - ③ 기타 법상·계약상 또는 사회통념상 회사가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IV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- (1)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
 - ① 업무상 취득한 직무 관련정보를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
 - ② 회사가 보유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거나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한 증권을 회사 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
 - ③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정보를 회사 또는 임직원의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
 - ④ 집합투자재산으로 펀드 판매,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
- (2) 이해상충 거래유형에 대한 대응방안

- ① 회사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관계에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보교류차단 통제 임원등과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조치
- ②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거래에 대해 종목,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관리하고 투자자에게 해당 사실 고지 등 필요한 취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

V.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중요내용

회사는 정보교류통제를 총괄하는 담당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, 달리 정하기 전까지 준법감시인을 “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”으로 정하고 준법감시인실을 정보교류차단 통제 담당조직으로 정함